

전주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1나3727 판결 [구상금 및 손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1나3727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1. 3. 10 선고 2019가단23772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 변호사 우승원

피고, 피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정송

담당 변호사 육현창, 이기동, 박정훈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상일

변 론 종 결 2021. 8. 25.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. 3. 10. 선고 2019가단2377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2. 7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7,844,651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지환, 판사 나상훈, 판사 오창민